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의안 번호	1442
----------	------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442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23년도 지출계획 상 예치금액이당초 대비 20% 초과(50%)하여
- 나. 당초 예치금 18,801백만원을 28,171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 다. 2023년 지출계획 변경내용

< 지 출 부 문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B)	2차 변경 (C)	증 감 (D=C-A)	증감률 (D/A*100)
계	18,801	19,271	28,171	9,370	50%
예치금	18,801	19,271 (+470)	28,171 (+8,900)	9,370	50%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15회 정례회)대비 재무활동(예치금) 20%초과(50%)변경

III.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 89억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에 반영하고, 수입 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중 **재무활동(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을 당초계획 대비 93억 7,000만원¹⁾을 증액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²⁾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³⁾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을 당초 지출계획(188억 100만원)보다 49.8%, 93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1)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 1차 변경('23. 9.13) : 재무활동(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4억 7,000만원)

※ 「지방기금법」 제11조 단서규정(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의회의결 없이 자체변경

- 2차 변경(금번 변경안) : 재무활동(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89억원)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296

〈표 3-1〉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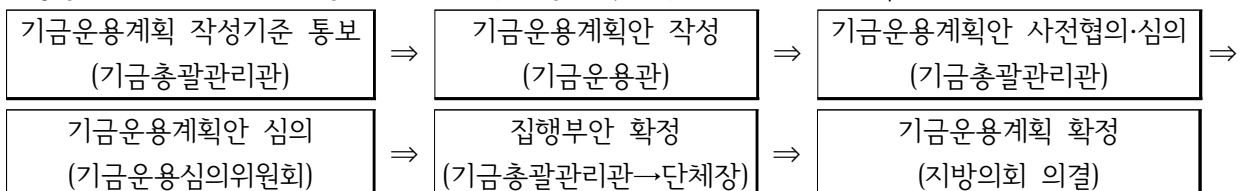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1 차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 출 합 계		52,752	59,622	68,522	15,770	29.8
도 로 시 설 물 관 리		33,936	40,336	40,336	6,400	18.8
재무활동(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18,801	19,271	28,171	9,370	49.8
보 전 지 출 (식 품 진 흥 기 금)		18,801	19,271	28,171	9,370	49.8
여 유 자 금 예 치		18,801	19,271	28,171	9,370	49.8
행 정 운 영 경 비		15	15	15	0	-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 ②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3.10.16), ③2023년 제1·2차 식품진흥기금 변경 심의자료 재구성

○ 행정안전부 훈령인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나⁴⁾,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⁵⁾ 이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⁶⁾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⁷⁾은 기금의 지출결산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명시하고 있어 기금운용 부서의 경우에도 **다음연도 이월액**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연도 이월액**을 예치금에 오기 합산

4)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293



5) 의안번호 : 1442,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제출일 : '23.10.16)

6)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6882('23.10.26) “2023년도 제5회 기금운용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기금운용협의회 일시 : '23.10.25 ~ 26(서면심의)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22.12), p.185

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를 수정하고자 의안제출이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어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한 의안작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기금의 경우, 금번 정례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제출하고 있어 사실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인 바, 의회의 기금심사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치금”으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
 - 기금의 지출계획중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8)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6882('23.10.26) “2023년도 제5회 기금운용협의회 개최결과 보고”(p.1)
· '23년 최초 예치금(수입)계획 변경(당초 15,930백만원 / 변경 17,312백만원)
▶변경사유 : 예치금 합계 오기(사고이월 13억 8,100만원) 정정(재정담당관-12992호, '23.10.23)